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안 시행

-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요건 및 기준 구체화 -

환경부는 2022년 12월 16일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하고 올해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적합성 판단 절차 도입, △외부검토키관 등록제도 시행, △녹색채권 사후 관리(모니터링) 체계 정립 등입니다.

1. 녹색채권 개요

1) 개념

녹색채권은 "기후완화, 적응 및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유동적 금융 상품"(IFC), "조달자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적격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자금 조달 또는 차환 조달하는 데 전적으로 사용되는 채권"(ICMA) 등으로 정의됩니다.

녹색채권은 '07년 유럽투자은행과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이 처음 발행하기 시작한 이후 '20~'21년 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1년 10월까지 녹색채권의 총 누적 발행 규모는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2) 녹색채권 요건

녹색채권이 해당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채권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고 4대 핵심요소(자금의 사용*,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의 관리, 보고**)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외부검토, 사후보고 등의 추가 절차가 요구됩니다.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어야 함. 조달자금의 사용처는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투자 및 차환을 포함. 단, 조달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차환에 사용되는 경우, 신규 투자와 차환의 예상 비율과 해당 녹색프로젝트 및 대상기간에 대해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조달자금의 사용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발행자는 보고서(관리체계 및 적합성 판단 확인서, 사전 외부검토 보고서, 사후 보고서, 사후 외부검토 보고서)들을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https://sribond.krx.co.kr>)에 공시해야 함

3) 참여자 기대효과

녹색채권 참여자(발행자, 투자자)는 일반 채권과 구별되는 편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발행자

- ① ESG성과 향상 수단: 녹색채권은 기본적으로 친환경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 도구이므로 발행기업은 녹색채권 발행 과정을 통한 추진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ESG경영 체계의 점검 및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음
- ② 투자자 신뢰도 제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절차 및 결과 공개를 통해 발행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투자자 인지도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
- ③ 내부 지배구조 개선: 자금 사용 투명성 확보와 보고로 프로젝트 수행 측과 기업의 재무관리 측 사이의 내부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음
- ④ 자금조달 위험 감소: ESG, 사회책임 투자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녹색채권 발행은 자금조달 규모 확대와 채권 수요 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또한 낮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투자자

투자자는 녹색채권 투자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채권 발행자의 녹색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이라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2.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안 주요 내용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 개정안을 '22년 12월 16일 발표하고 올해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녹색채권의 발행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며,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녹색채권 지침서 초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환경부는 2022년 기업, 금융기관 등과 함께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녹색채권의 그린워싱 방지, 외부검토 보고서 품질 제고 등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 필요성 제기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시행에 맞춰 녹색채권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요구를 바탕으로 지침서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 개정 내용

- ① 녹색채권 기준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전면 적용하기 위해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프로젝트)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 도입
- ②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를 시행하여 환경·금융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검토기관이 녹색채권 발행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외부검토기관: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제반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기관
- ③ 사후 보고서의 주기적 제출, 사후 외부검토 의무화 등 녹색채권 사후관리(모니터링) 체계를 정립하여 녹색채권 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도록 함
- ④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표준절차와 양식을 제공하여 채권발행의 편의성을 높임

2) 개정안 녹색채권 발행절차



3. 시사점

금번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안 실시로 녹색채권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발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행 절차 명료화, 작성 양식 표준화로 발행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적합성 판단' 절차의 신설로 투자자 신뢰도가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권고사항이었던 사후 외부검토를 의무화하여 그린워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했으며, 녹색채권 발행 절차에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검토기관'은 독립성, 전문성 등의 요건 심사 절차를 거쳐 등록을 의무화*하게 하여 녹색채권 외부검토 보고서의 품질과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 등록 기업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에 공개된 외부검토기관](#) 목록 참고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녹색채권 지침서 개정안 발표와 함께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기업들은 금번 지침서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피고 이후 추진되는 정책 동향을 주시하는 등 기업의 녹색 경영을 위해 적극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녹색채권 외부검토키관으로 정식 등록하여 녹색채권 관리체계의 외부검토 및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미국변호사

T. (+82) 2 6182 8502
E. synn@yoonyang.com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

강성운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91
E. swkang@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T. (+82) 2 6003 7674
E.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T. (+82) 2 6003 7470
E. khji@yoonyang.com